

2022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 일시 : 2022년 7월 5일(화요일) 11:00 ~ 12: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정용채, 박성수, 홍철운, 주상현, 김용우, 허연, 유명환, 박상민 위원

○ 불참자 : 안문석, 최옥채, 황인호, 이현욱 위원

○ 상정안건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경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병우)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5명 중 2명이 참석하여 「교원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청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함 (이상노)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교연비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차년도 교연비 예산의 5% 삭감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박상민) 삭감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삭감 대상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환수액이 부당수령액과 이에 대한 2배 가산 징수액이면, 총 3배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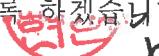
기획예산부처장 : 책자 30페이지 교육부 가이드라인 11번 유의사항의 첫 줄에 보시면 「총장이 법령 및 (이상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규정 및 계획 운영 시 차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예산의 5% 삭감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감사에서 몇 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않고 계속 적발이 된다면 이것은 대학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 그리고 환수액은 차년도에도 그 액수만큼 참여 제한하기 때문에 오백만 원 부당수령 시
(정용채) 전체적으로 삼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까지 차감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 교연비가 본래 기성회계가 있을 당시 봉급에 해당하였는데 기성회계가 없어진 후
(양병우) 교수님들 봉급이 상당 부분 깎였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육부에서 교연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봉급을 깎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고
하니 이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수령이라는 것도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행정에 서툴다 보니 실수를 하여 발생하는 자그마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보면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교수님들이 부당수령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모순이 큽니다. 교연비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으니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여 대학이 불명예를 받고 감사를 받게 되고 가이드라인
또한 점점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총학생회에서도
이해하고 비용지급심사위원회 등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0페이지 2번에 부당지급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이상노) 사안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승진·성과 상여금 지급 시 활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무처에서 참고하시어 관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2배 가산징수와 차년도에 그만큼
(양규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처벌 수위와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노)

위원 :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 시행을 하면 많은 사람이 혼선을 겪을 것
(김용우) 같습니다. 자료 5번에 총괄부서에서 교연비 실적에 대한 수시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교연비 특별부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연비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 이에 대해 부처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정용채) 인원이 보장되지 않아서 특정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전대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총괄부서에서 수시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 업무 담당에 대한 것은 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괄부서 수시 점검, 감사라는
(양병우)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서류를 갖춰서 올렸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 지급하여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되고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얻고... 이것은 사후약방문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전담팀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위원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영역별 민족도 조사, 자체점검 등이 생겼기 때문에
(정용채) 업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분류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우리 대학의 직원 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역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보수와 관련한 부분은 저도 교수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위원회 등에 참여를 해보니 교연비 신청을 올려놓은 것을 일일이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처에서도 직원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교수님, 직원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셔야 하고 만약에 허위로 자료를 올렸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술트랙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술지 흐름을 보면 표절율이 10%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일반트랙보다는 학술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	자료를 보면 부당, 적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적고 한두 번 실수한 내용까지 잘못하면 부당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지침으로라도 오류에 대한 것을 예외사항으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여기 나오는 부당이나 적발은 교육부에서 감사 진행 후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이상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상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양병우) 부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상에 있어 어느 정도 운영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만 명단을 발표하는 것 등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	부당지급자에 대한 명단은 별도 관리이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용채) 내부 기준으로 만들고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 지급기준을 교육부로 보내서 교육부의 동의가 이뤄져야 비용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적인 역할 때문에 교육부의 시행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고충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	해석상 문제인 것 같은데 책자 30페이지 11번 유의사항에 '총장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양규혁) 위반하여 규정 및 계획 운영 시 차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예산의 5% 삭감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성원 중 한 두 사람이 잘못된 논문을 내거나 학생지도를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부처장 :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상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으로 정해놨는데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보기에는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 발생한다면 운영이 잘 안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 :	이전에 기획처 주관으로 여러 부서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유명환) 학생 측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정위원회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 직원 분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 의견을 전달했을 때에도 대면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 (정용채)	그래서 모든 활동에 대해 상담자와 피상담자 모두가 한 화면에 나오는 증빙 사진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특수성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학생회에서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해주기로 사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학생과 상담한 것을 사진을 붙여야 비용을 준다는 사실이 교수와 학생 간 신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은 좋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 (정용채)	작년 교연비 관련하여 두 차례 감사를 받는 동안 최전선에서 교수,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최단시간에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진화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예견하고 말씀드렸고 단대별로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 설명 드렸습니다. 작년 투표 결과 일반트랙과 학술트랙을 병행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양규혁)	학생지도 영역에서 사진 첨부하는 것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인가요?
위원 : (정용채)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대학 사례를 보면 사진 등을 첨부했던 곳은 우리대학이 며칠 걸렸던 반면 반나절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감사가 없다면 자유롭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빙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 : (유명환)	저희 학생 측에서는 사진을 첨부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상담이 문자 한통으로 ^{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네, 전반적인 얘기가 이뤄지다 보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본부로 보내지는 방식은 어떨까요? 본부에서 전담 행정 인력을 꾸릴 수 없다면 1차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사전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불만 등의 문제들이 완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박성수)	실제 상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직원들이 사전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행정가들에게 당사자들의 행위를 전가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양병우)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위원 : (양규혁)	지급기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재정위원회의 기능이고 행정적으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추후 본부 측에서 협의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논의가 되었던 사진 첨부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학생 측에서 그런 반응이라면 이는 교수님들을 잘 설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배 가산금 추가 징수 후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는 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안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양병우)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양병우)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결정된 바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까지 기존에 간(間)서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속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에 주상현, 김용우, 유명환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작성일 : 2022. 7. 11.(월)

위원장 : 양병우
간사 : 이경환
기록자 : 부찬미